

#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32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8월 27일

발의자 : 남진삼 의장

찬성자 : 박춘희, 김광성,  
김성기, 심현정,  
이은미, 이창열 의원

## 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 
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 
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○ 평창군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하며, 주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므로,

○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에 관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,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

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위원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
### 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

나.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65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특별위원회”라 한다)는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### 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(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)의 심사를 포함한다.
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